

제 831 호
1981. 3.24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편집: 문화공보관 김 진 호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령	
제 1495 호: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동징수조례중개정조례 3
◎ 규 칙	
제 226 호 (교육위원회규칙):	서울특별시 학교체육지도위원회규칙 5
제 227 호 (교육위원회규칙):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재무회계 규칙중개정규칙 6
◎ 훈 령	
제 543 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에 관한 규정 중개정규정 8
◎ 고 시	
제 76 호: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자명칭변경및공사완료 공고 8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77 호 :	도시계획사업 (광장및도로) 실시계획인가	9
81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1
82 호 :	도시계획시설 (폐지)	11
83 호 :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계획결정	12
84 호 :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구역지적고시	13

◎

69 호 :	도시계획사업 (유수지) 실시계획공람공고	13
72 호 :	도시계획시설 (화곡동 29번지도로포장공사) 실시계획 공람공고	15
73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실시계획공람공고	15
74 호 :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19
75 호 :	도로공사계획	19
77 호 :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30
78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31
80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공람공고	31
16 호 (강등구공고) :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32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제 1499 호

서울특별시공유수면 점용료
등장수조례중개정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등장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공유수면 점용료등장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중 발표 "요금산정기준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부 칙

1981년 3월 24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요 금 산 정 기 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토지의점용	<p>1.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시가 표준액 (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p> <p>2. 시공의 재식 (농업재의) 연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p> <p>3. 농업용 목적으로 하는 점용 가. 잡류 농지세 해당 농지의 경우 연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유사지의 잡류 농지세과세표준 액의 100분의 15. 나. 울류농지세 해당 농지의 경우 연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p> <p>4. 광업용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다만, 토석 사력등을 채취 할 때에는 구분란 개 4 항의 제 1 호의 요금을 가산한다.</p> <p>5. 야적장등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p>

구 분	산 정 기 준																																
2. 스테이트장, 유선장, 유선대기장, 탈의장 (매점 포함)	인근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다만, 제외지등 인근 토지 등급 적용이 곤란할 경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토지 등급표상의 45 등급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3. 유수의 점용	1. 인수 (지하수 채취의 경우 포함) 가. 공업용수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padding-left: 20px;">관 경</td> <td style="padding-left: 20px;">100 %이하</td> <td style="padding-left: 20px;">월 액</td> <td style="padding-left: 20px;">50,000 원</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td> <td style="padding-left: 20px;">200 %까지</td> <td style="padding-left: 20px;">"</td> <td style="padding-left: 20px;">60,000 원</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td> <td style="padding-left: 20px;">300 "</td> <td style="padding-left: 20px;">"</td> <td style="padding-left: 20px;">80,000 원</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td> <td style="padding-left: 20px;">400 "</td> <td style="padding-left: 20px;">"</td> <td style="padding-left: 20px;">110,000 원</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td> <td style="padding-left: 20px;">500 "</td> <td style="padding-left: 20px;">"</td> <td style="padding-left: 20px;">140,000 원</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td> <td style="padding-left: 20px;">600 "</td> <td style="padding-left: 20px;">"</td> <td style="padding-left: 20px;">190,000 원</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td> <td style="padding-left: 20px;">700 "</td> <td style="padding-left: 20px;">"</td> <td style="padding-left: 20px;">250,000 원</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td> <td style="padding-left: 20px;">800 "</td> <td style="padding-left: 20px;">"</td> <td style="padding-left: 20px;">300,000 원</td> </tr> </table> 자연취수 및 801 % 이상은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 ㎥당 100 원씩 적용. 나. 농업용수 연액, ㎥ / ㎥당 10,000 원 2. 배 수 가. 공업용수 월 200,000 ㎥까지 월액 20,000 원 월 1,000 ㎥증가시 마다 50 원가산 나. 기타용수 월 200,000 ㎥까지 월액 15,000 원 월 1,000 ㎥증가시 마다 50 원가산 3. 선박 운전을 위한 이용 수익 예상액의 100분의 30. 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 4. 기타점용 전 각호의 기준에 의거 산정된 금액	관 경	100 %이하	월 액	50,000 원	"	200 %까지	"	60,000 원	"	300 "	"	80,000 원	"	400 "	"	110,000 원	"	500 "	"	140,000 원	"	600 "	"	190,000 원	"	700 "	"	250,000 원	"	800 "	"	300,000 원
관 경	100 %이하	월 액	50,000 원																														
"	200 %까지	"	60,000 원																														
"	300 "	"	80,000 원																														
"	400 "	"	110,000 원																														
"	500 "	"	140,000 원																														
"	600 "	"	190,000 원																														
"	700 "	"	250,000 원																														
"	800 "	"	300,000 원																														

구 분 산 정 기 준

4. 산출물의 채취
 1. 토석, 사력의 채취
 가. 서울특별시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수석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호의 조사는 공신력 있는 2개이상외 조사기관에
 의하여 2개지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시정
 기준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2. 죽목, 잘대, 목초 및 기타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하지 않는 것은 전호, 점용이 수반하는 것은
 구분란 제1항 제2호에 준하여 산정.

5. 전 주 구분란 제1항 제1호에 준한다.

6. 기타점용등 전 각항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규 칙

서울특별시 학교체육지도위원회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1.3.18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이창갑

◎ 교육규칙 제 226 호

서울특별시 학교체육지도위원회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주최하는 각종 체육행
사의 지도와 체육대회 운영 및

일반체육의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지도위원회) 각종 체육행사
의 지도와 체육대회운영 및 일반
체육의 지도를 위하여 교육위원회
내에 학교체육지도위원회 (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3 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
함한 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
원장은 학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초·중등학교 교원, 체육계 및 관
제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 4 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각종체육대회의 행사의 지도
- 2. 각종 체육대회 운영
- 3. 일반체육 자문

제 5 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6 조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위원장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7 조 (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81.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1. 3. 18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이창갑인

◎ 교육규칙 제 227 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중 "분임지출원·교육구청 관리과장"을 "분임지출원·교육구청 관리과장, 사업소 사무과장"으로 하고

"수입금 출납원, 교육구청은 경리계장, 기타 청소는 사무과장"을

"수입금 출납원, 교육구청은 경리계장, 사업소는 경리 주무담당주무자"로 한다.

제 5 조 제 1 호중 "100 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동 제 2 호중 "50만원"을 "200 만원"으로 한다.

제 6 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분임지출원 및 출납원이 사용한 인감(별지 50 호서식)은 반드시 지출원 및 교육구청 분임지출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6 조 (예산집행의 품의) 예산집행의 품의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 27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예산집행틀위에 있어서 제 5 조 각호의 한도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주판 과장은 관리국장과 관리과장의 합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 50 조 제 2 항중 교육구청을 "청소"로 하고 "교육구청장"을 "청소의장"으로 한다.
 제 92 조 제 1 항및 제 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항중 제 50 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③ 제 1 항및 제 2 항의 규정은 교육

구청분임지출원, 사업소분임지출원및 금고출장소에 준용한다.
 제 173 조 제 2 항중 "교육구청지출원"을 "청소의분임지출원"으로 하고 "지출계산서(제 75 호서식)의 증빙서류"를 "지출계산서(제 75 호서식)"으로 한다.
 제 174 조 제 3 항중 "교육구청분임지출원"을 "청소의분임지출원"으로하고 "교육구청장"을 "청소의장"으로한다.
 부 칙 (81. 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제 50 호서식)

(전 면)

개정

No		예금인감신고서		년 월 일부터사용	
회 계 적 인	사 용 인 감	회계식명			
		지 소 명			
		서 기 명	(서명만을사용) 사날인	검 인	
		전화:			

(후 면)

예금인감신고서	
귀회와 예금거래에 사용할 서명인감을 뒷면과 같이 신고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함.
예금주 ㉠	확인자: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	(분임)지출원 ㉡

훈 령

서울특별시립병원임상연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團
1981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훈령제 543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임상연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립병원임상연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중 제 1 항 및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지급의 한계) ①연구비는 매 연구과제마다 지급하되 지급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연구과제가 방대하여 1인이상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매 연구과제마다 지급하되 그 지급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임상연구비지급규정은 폐지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76 호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과 명칭변경 및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30 호 (81.2.12) 로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허가한 망우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제 91 구획 (동대문구 목동 165 : 시장용지)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법인명칭) 변경 및 동사업 (소매시장) 시행완료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와 동법제 57 조의 2 및 건설부고시제 463 호 (79.12.10)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에 공고함.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3. 21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목동 165

나. 사업의종류및 명칭: 동시계획사업

(소매시장) - 세진종합시장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면적: 4,536.165 평방미터

2) 규모: 판매장 및 관리시설 (건물 1동 8,000.9576 평방미터 - 지하층 3,680.8627 평방미터, 1층 2,066.9276 평방미터, 2층 2,253.1673 평방미터)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1) 당 초: 강서구동촌동 545-3 (태능산업(주) 대표이사 이길웅)
- 2) 변경: 동대문구목동 165-1 (주식회사 세진 대표이사 이길웅)
- 3) 변경일자: 81.3.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81.2.9 - 81.3.16

바. 공사완료도면: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77 호

도시계획사업 (광장및도로)

실시 계획인가

- 1. 건설부고시 제 137 호 (77.7.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318 호 (77.9.1) 제 653 호 (78.12.14) 로 도시계획시설 (광장) 결정, 도시계획시설 (광장) 지적승인,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된 광장 및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건설부고시제 463 호

(79.12.10)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동법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여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3. 21.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의 위치: 길동 459 의 9 앞 광장, 성내동 449 의 22 앞 도로
- 2. 사업의종류및명칭: 도시계획사업 (광장및도로) 포장공사
- 3. 사업규모: 시행면적 3,733.8 ㎡ 아스팔트도장 18.4 a 하수도시설 120 m 기타부대공 1 식
-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 5. 착수및 준공예정일: 사업인가일로부터 1년
- 6. 사용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7.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보 지 조 서					
번호	동 명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소 설명
1	길 동	459-8	대	71.7	강동구 둔촌동 54 안주원
2	"	459-9	"	330.4	채 비 지
3	"	459-7	"	16.3	강동구 둔촌동 54 안주원
4	성내동	379-42	"	26.4	송로구 윤니동 97 이금임
5	"	379-41	"	280.8	채 비 지
6	"	379-40	"	145.0	"
7	"	379-39	"	22.2	성동구 중곡동 99 의 6 한구연
8	길 동	429-1	"	75.6	전주시 중앙동 2가 20 최연옥
9	"	428-1	"	225.0	채 비 지
10	"	427-1	"	171.5	충북괴산군괴산면대사리 111 이태훈
11	"	426-1	"	6.3	송로구 계동 143 이훈
12	둔촌동	436-5	"	382.5	채 비 지
13	"	436-5	"	82.9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242-14 한현석
14	성내동	449-21	"	17.3	강남구 신사동 332-5 이태원
15	"	449-22	"	1,052.3	채 비 지
16	"	449-23	"	17.7	강서구 신정동 128 의 83 김무생
17	둔촌동	543-2	"	5.5	채 비 지
18	"	543-25	"	728.6	"
19	"	543-26	"	75.8	"

건 물 조 사

번호	동 명	지 번	구 조	저축명수	소 유 자 주소 설명
1	길 동	459-9	목조와가	12.28 명	강동구 둔촌동 54 안주원
2	성내동	379-41	스라브	28.32 "	송로구 윤니동 97 이금임
3	길 동	427-1	경와조	15 "	충북괴산군괴산면대사리 111 이태훈
4	"	428-1	스라브	34 "	길동사무소청사

◎서울특별시고시제 81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60 호 (80.3.12)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설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0 호 (80.5.23) 로 지적승인된 마포구 중동 31-2번지의 22 필지 (13,083㎡) 에 대하여 공람공고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24조와 제 25조 동법시행령 제 25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에 의거 사업시행을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1.3.23

서울특별시장

사 업 개 요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동 31-2번지의 22 필지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서울신북국민학교
3.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4.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3,083㎡

(3,953 평)

5.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 가. 착공예정일 : 시행허가후 3 개월 이내
 - 나.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2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지적,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 규정의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82 호

도시계획시설변경 (폐지)

1. 건설부 고시 제 131 호 (76.8.21) 및 서울시 고시 제 256 호 (76.10.2) 의 관련임
2. 영동아파트지구 (1 - 5 주구) 내 강남구 잠원동 204 부락내의 도시계획시설 (아동공원) 은 다음과 같이 이를 폐지한다.

1981. . .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변경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아동공원	영동 1-5 주구 204 부락내	1,000	
변 경	"	"	0	폐 지
도시계획시설변경 (폐지) 조서				
가. 시설변경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아동공원	영동 1-5 주구 204 부락내	1,000	
변 경	"	"	0	폐 지
<p>나. 변경사유</p> <p>도시계획법 제 12조에 의거 동단지내의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아파트 기본 계획상의 아동공원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의 규정 즉 따라 공동주택건설시 일정규모 (100세대까지 330㎡초과시 3세 당 3.3㎡)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복사항이므로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시설기준 면적에 의거 대체시설코저하며 차기 사업분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기준 면적에 의거 추가 시설코저함.</p> <p>◎서울특별시고시제 83호</p> <p>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계획결정 1. 건설부고시 제 55호 (81. 2.20)</p> <p>호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특정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5조 규정에 의거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제의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9조 9항 43호 및 45호에 의거 결정하였기 이르고 식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국 재개발 2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1. 3.24. 서울특별시장</p>				

가. 내역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북정구역	중구북정동 11번지일대	5,763.3	
나. 도면 및 조서 : 별첨 (생략)			
<p>주택개발을위한재개발사업 구역지적고시</p> <p>1. 건설부고시제 55(81.2.20) 호로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으로 결정된 북정구역 (2-3)에 대하여</p>		<p>도시계획법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79.12.10) 호 규정에 의 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국 재개발 2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한다.</p> <p>1981. 3.23. 서울특별시장</p>	
가. 지적고시내역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2-3	북정구역	중구북정동 11번지일대	5,763.3
나. 도면 및 조서 : (생략)			
<p>공 고</p> <p>도시계획사업 (유수지) 실시계획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고시제 395호 (80.11.28) 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p>		<p>계획사업시설 (유수지) 부지에 대하 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하고각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 부터 14일 간 일반에게 공람시킵니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하수국 하수시설과와 구도구청 도시정비과, 토목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3.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p>	

<p>별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1. 3. . 서울특별시</p> <p style="text-align: center;">(공 략 개 요)</p> <p>1. 사업시행지 : 구로구 독산동 699번지의 13필지</p> <p>2. 사업의종류 : 가. 도시계획사업(유수지) 명칭 : 나. 독산유수지 배수펌프장 시설공사</p> <p>3. 사업의규모</p>	<p>시행면적 : 19,500㎡(5,699평)</p> <p>유수용량 : 35,000㎥</p> <p>모터펌프 : 300HP X 4대</p> <p>진 발 : 200㎡</p> <p>기타부대공 : 1식</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p> <p>5. 사업착수 및 준공연월일 가. 사업착수일 : 1986. 3.27 나. 준공예정일 : 1981. 4.30</p> <p>6.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p> <p>7. 토지 또는 건물외 수용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p>
---	---

소 개 지	지 목	수용면적	소 유 자
독산동 677-7	도로	29	태평로 2가 250 연합철강㈜
" 688-5	"	321	"
" 695	담	351	독산동 597 김정배
" 696	"	621	시흥동 155-5 김동태 외 5인
" 697-2	"	67	독산동 545 김중배 외 1인
" 697-3	"	5	"
" 689-5	"	5,758	독산동 549 이복래
" 689-6	"	160	"
" 701	"	3,385	시흥동 155-5 김동재 외 5인

소 계 지	목	수용면적	소 유 지
독산동 700	담	1,322	독산동 545 - 김충백외 1인
" 702-1	"	611	구로구 간이주택 1035 김홍철
" 699-2	"	3,798	가리봉동 292 박홍분
" 709-3	"	389	독산동 513-2 서태정
계	13필지	16,817	(5,087명)

◎서울특별시공고제 72 호

도시계획시설(화곡동 29 번지 도로보장공사) 실시 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27 호(75.8.19)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6m 계획선) 화곡동 29 번지 외 2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시행인가)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고하고자 이에 공고함
2.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하고 관계 도서는 강서구청 건설관리과와 토목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낸다.

1981. 3. 17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7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보장)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 368 호(77.10.2)전 설부고시제 91 호(80.4.7)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9 호(80.4.16)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동작로-경부고속도로간 도로 확장구간에 서속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에게 공람 시킨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통지할 것이며 미수령자에 대하여서는 이공고로 갈음 한다.
3.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시설과와 강남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낸다.

1981. 3. 20

서울특별시장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의 권리명세	참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강남구반포동산75-11	임	318.6㎡	동작동 102-53	김기화	없음	없음	없음	보상완료
반포동 616-3	잡	225.4㎡	반포동 1-92	이병수	"	"	"	
" 614-3	대	427.4㎡	육석동 170-42	이태훈	"	"	"	
" 303-3	전	503.8㎡	울지로 4가 257	김인식	"	"	"	
" 71-10	임	319.3㎡	육석동 169-7	방대원	"	"	"	
" 산 69-4	"	326.2㎡	반포 235 신반포 2지구 101-601	이경행	"	"	"	
" 산 77-3	"	85㎡	서대문홍계동 287-96	이종화	"	"	"	
" 612-111	대	80.3㎡	동작동 307 ㉠ 89-302	이해림	"	"	"	
" 612-113	전	90.9㎡	신사동 305-4	지정자	"	"	"	
" 613-2	답	95.8㎡	동작동 307	김영남	"	"	"	
" 산 74-22	임	307.4㎡	반포동산 74-8	태양건축	"	"	"	
" 산 74-23	"	184.4㎡	반배동 12-23	김창희	"	"	"	
" 산 74-24	"	199.6㎡	면목동 370-3	오명년	"	"	"	
" 산 74-20	"	196㎡	반포 239-1 우선 ㉠ 103-802	김동근 의 1	"	"	"	
" 산 74-26	"	176.8㎡	면목동 378-3	오명년	"	"	"	
" 산 74-25	"	191.7㎡	면목동 370-3	오명년	"	"	"	
" 산 74-21	"	158.6㎡	논현동산 34-27	박상길	"	"	"	
" 산 71-9	"	137.5㎡	육석동 169-7	방대원	"	"	"	

32-16

북 831 호

보 1981.3.24

1392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외 권리명세	참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반포동산 70-5	임	49.6	이촌동 300-304	정택영	없음	없음	없음	보상완료
" 산 70-4	"	37.3	서초동산 150-18	이경하	"	"	"	"
" 산 69-3	"	23.5	부산남구남천 148 삼익 ㉠ 18-501	최환	"	"	"	"
반포동 129-4	답	305	서초동 61-8	김정린	"	"	"	"
" 129-8	"	238	잠실 5동 ㉠ 519-1008	김정은	"	"	"	"
" 129-9	"	238	도곡동 108-43	김정란	"	"	"	"
" 130-6(나)	"	290.9	반포동 510-5	이갑주	"	"	"	"
" 129-10	"	289.6	송정동 66-117	최명선	"	"	"	"
반포동체비지 304 부리나	체비지	206.2	송인동 1435 JKA 12-505	전상화	"	"	"	"
" " 304부리 !가	"	350.4	서초동 34 삼호 ㉠ 8-1401	최두영	"	"	"	"
" 130-6가	답	880	반포 510-5	이갑주	"	"	"	"
" 130-4	"	909	~ " ~	김소순	"	"	"	"
반포동 체비지 산 74-5	"	40	반포 264-6 신반포 33-302	김서봉 최!	"	"	"	"
반포동 132	"	231	반포동 90	정현동	"	"	"	"
" 136	"	1,045	반포동 610-5	이갑주	"	"	"	"
" 136	"	1,579.8	학동 산 21	대한공사	"	"	"	"
" 130-5	"	401.3	반포동 610-5	이갑주	"	"	"	"

제 831 호 시

노 1991.3.24

32-1가

소재지	지번	수용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의 권리명세	참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반포동	129-2	담	597㎡	반포동 610-5	대한주택공사	없음	없음	없음	보상완료
석촌동	84-6	잡종	107.4㎡	여의도 1-45	이한구의	"	"	"	"
"	84-5	"	102.5㎡	시범(6) 16-51	29인	"	"	"	"
"	85-4	"	102.5㎡	상도동 134-98	이은호의3인	"	"	"	"
반포동	130-7	임야	209.3㎡	개봉동 360-6	신우제	"	"	"	"
"	114-2	"	1,849㎡	학동 산 21	대한주공	"	"	"	"
"	115	"	"	반포 610-5	이갑주	"	"	"	"
석촌동	89-1	전	7.6㎡	용산구 한강로 3가 65-228	삼익주택	"	"	"	"
"	88-2	"	142.1㎡	~ ~ ~	~ ~ ~	"	"	"	"
체비지	335-6	채비지	33㎡	서울특별시	서울시	"	"	"	서울시
반포동	132	전	489.3㎡	중구상림동 35-1	홍택순	"	"	"	"
"	132-2	"	115.7㎡	중구상림동 35-1	홍택순	"	"	"	"
체비지	335-7	채비지	42.3㎡	서울특별시	서울시	"	"	"	서울시
"	308-2	"	981.8㎡	동작동 13-3	삼효주택 (조용시)	"	"	"	"
"	337-2	"	280㎡	~ ~ ~	~ ~ ~	"	"	"	"
계		49필지	16,198.8㎡						

32-18

제 831 호 시

보 1981.3.24

<p>○ 서울특별시 공고제 74 호</p> <p>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p> <p>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8 조 1 항에</p>	<p>의거 전기용품제조업허가를 취소하고 동법 제 26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1.3.20.</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다 음

업 체 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구분	허가번호	취소사유
우리전업사	중구입정동 10번지	박민규	배선기구류	3-24-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7 조 1 항 위반

<p>○ 서울특별시 공고제 75 호</p> <p>도로공사계획</p> <p>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 도로</p>	<p>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 22 조 및 동법 제 24 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 12 조의 2 및 동시행령 제 24 조의 3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	---

다 음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공사개요	시공자	공사기간
	면목동 113의 11 - 112 의 56 간	면목 6 동 113 의 11 - 112 의 56 간 포장 및 하수도공사	콘크리트포장 4.3 ㉔ 하수도 D=60 L=64	성보건설 박종배	81.1.30 - 5.30.
	청량리 2 동 215 의 33-442 의 2 간	청량리 2 동 215 의 33-442 의 2 간 포장	콘크리트포장 7 ㉔	신용건설산업 김동환	81.1.26 - 5.30.
	청량리 1 동 75 의 3-40 의 2 간	청량리 1 동 75 의 3 -40 의 2 간 보도부력 포장공사	보도부력: 7.8 ㉔	"	81.1.26 - 5.20
	청량리 1 동 91 의 5-116 의 간	청량리 1 동 91 의 5-116 간 보도부력 포장공사	보도부력: 4.8 ㉔	"	81.1.26 - 5.30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공사개요	시공자	공사기간
	목1동 156의 25 -155의 4, 목 2 동 236의 54 - 236의 29	목1동 156의 25 - 155의 4의 1개소 포장 및 하수도공사	하수도 $D=60 L=160^m$ 콘크리트포장 7.26 @	우미건설(주) 이 해 중	81.1.29 -5.29
	면목 4 동 384 의 1-384의 51간	면목 4 동 384의 1- 384의 51간 포장	콘크리트포장 $A=6.89@$	풍한기업공사 김 대 근	81.2.4 -5.4
	면목 4 동 385의 1-385의 54 간	면목 4 동 385의 1- 385의 54간 포장	콘크리트포장 $A=7.18@$	"	81.2.4 -5.4
	면목 4 동 385의 1-389의 1간	면목 4 동 385의 1- 389의 1간 하수도	하수도 ($D=45$) $L=105^m$	"	81.2.4 -5.4
	장안 1 동 121의 4-125의 18	장안 1 동 121의 4- 125의 18간 포장	콘크리트포장 2.2a	범진산업(주) 김 삼 봉	81.1.29 -4.28
	전농 1 동 530의 71-530의 79	전농 1 동 530의 71 -530의 79간 포장 및 하수도공사	콘크리트포장 4.73 a 하수도 $D=60cm L=89^m$	"	81.1.29 -4.28
	신내동 324-311	신내동 324-311간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7.5 a	의림건설(주) 이 대 연	81.1.29 -4.28
	상봉 1 동 116의 5-100의 3	상봉 1 동 116의 5- 100의 3 포장 및 하수도공사	콘크리트포장 4.3 a 하수도 $D=60cm L=64^m$	"	"
	상봉 1 동 263의 7	상봉 1 동 263의 7 보도부리 설치공사	보도부리 3.6a	"	"
	상봉 1 동 186의 7	상봉 1 동 186의 7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2.3 a	"	"
	제기 1 동 389- 380	제기 1 동 389-390 간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5.7 a	현영건설(주) 배 정 두	81.2.3 -4.30
	용두 1 동 80의 17-80의 23	용두 1 동 80의 17- 80의 23간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3.8 a	"	"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공사개요	시공자	공사기간
	용두 1 동 75 의 2-79	용두 1 동 75 의 2- 79간 석축공사	석축 A=125㎡	천연건설(주) 배 정 두	81.2.3 -4.30
	용두 2 동 112 의 79-112 의 32	용두 2 동 112 의 79 -112 의 32 간 포장	콘크리트포장 7.8a	"	"
	상봉 2 동 125 의 1-124 의 5	상봉 2 동 125 의 1- 124 의 5 간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13.6a	범진산업(주) 김 삼 봉	81.2.1 -4.2
	상봉 2 동 113 의 24-113 의 85	상봉 2 동 113 의 24- 113 의 85 간 포장	콘크리트포장 7.3a	"	"
	면목 7 동 673 의 88-673 의, 89	면목 7 동 673 의 1개 소 하수도공사	휴관부설 L=3.55 (L=60cm)	유일공업(주) 김 훈 설	81.1.29 -5.14
	면목 7 동 353 의 1-351		원형맨홀 (1.5×1.5) N=114개소		
	면목 6 동 43 의 1 -43 의 8	면목 6 동 43 의 1- 43 의 8 번지 하수도 및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t=20cm) A=6.7a 휴관부설 (D=60cm) L=152m	임 찰	81.3.21 -6.28
	신설동 114 의 1 -114 의 17	콘크리트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2.39a	승진산업(주) 유 판 기	81.1.27 -5.29
	신설동 114 의 17 -114 의 3	하수도공사	하수관매설 D=45 L=130m	"	
	답십 2 동 35 의 1-29 의 60	콘크리트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4.71a	"	
	답십 2 동 68 의 1-70 의 18	콘크리트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6.11a	"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공사개요	시공자	공사기간
	중화2동319의 9-319의 41	보도부력 및 하수도공사	보도부력포장 6.1a 하수관매설 D=60 L=114m D=45 L=61m	일우공영(주) 이석재	81.3.10 -5.9
	중화2동318의 65-318의 13	보도부력포장 및 하수도공사	보도부력포장 3.73a 하수관매설 D=60 L=45m D=45 L=79m	"	"
	중화2동318의 29-318의 46, 36	보도부력 및 하수도공사	보도부력포장 A=2.03a 하수관매설 D=60cm L=44m D=45cm L=68m	"	"
	망우1동127의 21-127의 24	망우1동127의 21 -127의 24의 2개소 하수도및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A=2.18a	범진산업(주) 김삼봉	81.1.29 -4.28
	망우1동127의 10-127의 23	"	보도부력포장 A=1.36a	"	"
	망우1동365의 9-363의 14	"	하수도 (D=45 -60(m)) L=160m 콘크리트포장 A=4.07a	"	"
	중화2동325의 1-325의 59	중화2동325의 1- 325의 59의 2개소 하수도공사	하수도 (D=60) L=140m	유일공영(주) 김순철	81.1.29 -4.28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공사개요	시공자	공사기간
	중화 2 동 325 의 59 ~ 325 의 35	중화 2 동 325 의 1 - 325 의 59 의 2 개소 하수도공사 (선화: 2.9)	하수도 D=60 L=95m I형추구: 70m 하수도 D=60 L=57m	유일공영(주) 김춘철	
	감사 130 ~ 중화 2 동 325 의 55 인 325 의 2 개소	하수도공사	I형추구: 120m		
	제목: 거리질서 확립 대책시달 망우 1 동 207 의 2 - 360 의 17	망우국교주변 하수도공사	개거복개 (B=4.55) L=214	범진산업(주) 김삼봉	81. 3.10 - 6.7
	1. 범구면 면목 2 동 177 의 41 관작 77 의 17 인 17 동화 178 인 17 인	거리질서 확립 대책시달 망우국교주변 하수도공사	하수도(D=60) L=100	유신토건(주) 유신토건(주) 김삼봉	각급 수립 시
	행에 만전을 기할 것의 하수도 복개 포장공사	복개 포장공사	레크리토포장 A=8a	유신토건(주) 김삼봉	81. 4.15
	삼죽동 긴갈열수 306 - 177 의 7	복고화전 하수도 신설공사	호판배설 D=60CM L=100m	상원사업사 이주익	81. 1.28 - 5.28
	침 부: 거리질서 확립 세 부 추진 계획 노 동 62 의 20 - 64 의 5	보도부력포장공사	및 거리질서 확립 종합대책 신공전설산 A=5.72	업 김동한	81. 1.26 - 4.25
	휘경 1 동 212 의 3 - 86 의 4	보도부력포장공사	보도부력포장 A=4.16a		
	휘경 2 동 1049 의 859 - 1049 의 809	보도부력포장공사	빛물받이 3개소 보도부력포장 A=6a	장	
	희기동 33 의 1 - 3 의 117	하수도개수공사	빛물받이 12개소 하수도 L=105m		
	망우 2 동 494 의 3 - 493 의 51	하수도 공사	D=60CM L=160m	범진산업(주) 김삼봉	81. 1.27 - 4.26

수진처: 서과 1-77, 직할 7, 서구 1-17, 서사 1-78.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공사개요	시공자	공사기간
	중화 1 동 315 의 61- 315 의 1	포장 (콘크리트) 하수도공사	포장 A=5.3 a D= 45 CM L= 172 m	법진산업(주) 김삼봉	81. 1.27 - 4.26
	중화 1 동 312 의 120- 312의46	보도부력포장공사	A=6.8 a	"	"
	중화 1 동 286 의 36- 286의 12	보도부력포장 및 하수도공사	A=3.17 a D= 45 CM L= 85 m	"	"
	상봉 2 동 129 의 26- 129의 6	콘크리트포장 및 하수도공사	A=3.4 a D= 60 CM L= 67 m	"	81. 3.10 - 5.23
	상봉 2 동 130 의 139- 130의 127	보도부력포장 및 하수도공사	A=3.31 a D= 45 CM L= 90 m	"	"
	상봉 2 동 107 의 26- 107 의 32	보도부력공사	A= 4.97 a	"	"
	전농 3 동 52 의 7 - 67 의 28	전농 3 동 57 의 7 - 67 의 28 간 포장 및 하수도공사	콘크리트포장 A=7.8 a 하수도(D=60CM) L=55 m	"	81. 3.30 - 5.30
	휘경 1 동 194 의 94- 94 의 77	휘경 1 동 194 의 94 -194의 97 간 포장	보도부력 A= 1.05 a	"	"
	휘경 1 동 124 의 8- 124 의 6	휘경 1 동 124 의 8 - 124 의 6 간 포장	보도부력 A= 1.79 a	"	"
	망우 1 동 358 의 3- 357 의 1	망우 1 동 358 의 3- 357 의 1 간 포장	콘크리트포장 A= 10.3 a	"	81. 3.20 - 5.20
	망우 1 동 357 의 1 - 353의 22간	망우 1 동 357 의 1 - 353의 22 간 포장	콘크리트포장 A= 11.5 a	"	"
	면목 5 동 153 의 31- 155의 50	면목 5 동 153 의 31- 155의 50 간 포장	콘크리트포장 A= 3.7 a	"	"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공사개요	시공사	공사기간
			하수도(D=45CM) L=97.5 m		
	제기동 892-659	제기 간선도로포장 및 하수도공사	아스팔트포장 A=135 a	일우공영(주) 이식재	81. 2.20 - 8.18
			하수도 L=2,500 m		
	제기동 1140 의9 - 892 의 1		하수도(D=60CM) L=359 m		
	목동 163 의9 - 163 의 1	목동세진상가입구 도로포장공사	아스팔트포장 A=16.2 a 콘크리트포장 A=11.8		
			하수도(D=60CM) L=267 m		
	목1 동 173 의7 - 173 의 3	콘크리트포장 개수공사	콘크리트포장 A=2.8 a	상원기업사 이주식	81. 1.28 - 5.28
	면목 5 동 157 의2 - 157 의 37	면목 2 동 177 의 41 178 의 178 번째 외 1 개소 하수도 및 포장공사	L형측구: 219m 콘크리트포장 A=5.6 a	유신토건(주) 김동길	81. 3.17 - 6.14
	제기 2 동 856 의 857 번째간	제기 2 동 857 의 856 외 1 개소포장 및 하수도공사	하수도(D=60CM) L=473 m D=90CM L=40 m	일우공영(주) 이식재	81. 1.26 - 5.24
	당심 4 동 4 의 68 - 4 의 57 간 포장		보도부력포장 A=1.05 m		
	청량 2 동 205 의 491-205 의 535 간	청량 2 동 205 의 491 - 205 의 535 번째 외 2 개소 포장 및 하수도공사	콘크리트포장 t=20 CM A=10.49 a 하수도(D=60CM) L=174 m	승진산업(주) 유판기	81. 3. 4 - 5.17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공사개요	시공자	공사기간
	취경 1동 122의 6- 122의1 간	청양 2동 205의 491-205의 535 번지의 2 개소 포장 및 하수도공사	보도부력포장 (30×30×6)CM A= 1.21 a 하수도(D=45CM) L= 40 m	승진산업(주) 유판기	81. 3. 4 - 5.17
	취경 1동 148의 49- 148의3 간	"	보도부력포장 (30×30×4) A= 2.14 a 하수도(D=45CM) L= 65 m	"	"
	면목 1동 501의4 -면목3동499의25	면동국교주변 하수도공사	암거 (1.8m×1.8m) L= 102.5 m	"	81. 3. 17 - 5.27
	남십 2동 86의85 -간	답십리 2동86-85 의 1 개소 포장 및 하수도공사	콘크리트포장 A= 8.35 a	81.3.18 입찰	81. 3. 20 - 6. 4
	용두 2동 721의8 - 733의1 간	"	하수도 D= 60 CM	"	"
	이문 1동 87. 97 - 88 의 23	이문 1동 87-88 번 지간포장및 하수도 공사	콘크리트포장 3.6 a 하수도 D=60CM L= 100 m	유림실업(주) 유천근	81. 1. 29 - 4.28
	이문 3동 165의3 - 165 의 11	이문 3 동 165 의 3 - 165 의 11 간 포장	보도부력 3.2 a	"	"
	이문 3 동 220의 123-220의3	이문 3 동 220의 123 -220의 3 간 포장 및 하수도공사	콘크리트포장 3.6 a 하수도 D=60CM L= 114 m	"	"
	이문 3 동 172 의 174	이문 3 동 172 의 124 주변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3.6 a	"	"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공사개요	시공자	공사기간
	이문1동134의4 -134의44	이문1동134의4- 134의44간포장공사	보도부력포장 A = 2.6 a	유림산업(주) 유철근	81.1.27 -4.28.
	목2동233의54 -233의62	목2동233의54- 233의62간포장공사	보도부력포장 A = 4 a	상원기업사 이두익	81.2.28 -4.11.
	당우3동409의1 -410의6	당우3동409의1- 410의6간포장및 하수도공사	콘크리트포장 9.49 a 하수도 (D=60cm) L = 73		81.3.30 -5.33
	당우3동412의2 -412의46	당우3동412의2- 412의46간포장및 하수도공사	콘크리트포장 11.12 a 하수도 (D=60cm) L = 85		.
	면목4동393의1 -392의6	면목4동393의1- 392의6간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A = 4.59 a		.
	면목7동673의21 -673의88	면목7동673의21- 673의88간포장	콘크리트포장 12.46 a		.
	용우1동39의395 -39의636	용우1동39의395 -39의636간포장 및 하수도공사	콘크리트포장 5.6 a 하수도 D=45 L=76m		81.3.20 -5.23
	이문3동220의 285-220의295	이문3동220의285 -220의295간포장 공사	보도부력 A = 2.5 a		81.3.20 -5.20
	이문1동154의 1-176의12	이문-취경동간도 로포장공사 상곡여중진입로 복개공사	보도부력 A = 19 a 복개 B = 6.8m L = 60 m 암거 (3 x 2 x 2 령) L = 17 m		81.3.18 -5.3 81.3.20 -6.20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공사개요	시공사	공사기간
	면목4동393의6	면목4동393의5-	콘크리트포장		81.3.20
	-398의1	398의1간포장	A=15.75㉔		-6.20
	면목4동383의	면목4동383의55-	콘크리트포장		"
	55-398의1	398의1간포장	A=17.34㉔		"
	전농4동204의	전농4동204의42-	콘크리트포장		"
	42-204의23	-204의23간포장	A=2.94㉔		"
		및 하수도공사	하수도 D=45 L=45m		"
	면목7동668의	면목7동668의61-	콘크리트포장		"
	81-673의61	-673의61간포장	A=15.68㉔		"
	북1동156의25	북1동156의25-	콘크리트포장		"
	-155의4	155의4간포장	A=7.5㉔		"
	장안1동194의	장안1동194의19-	콘크리트포장	범진산업(주)	81.1.29
	19-194의28	-194의28간포장	3.09㉔	김삼봉	-4.28
		및 하수도공사	하수도 D=60 L=101m		"
	청량1동124의	청량1동124의7-	콘크리트포장	"	81.3.2
	7-37간	37간 포장공사	A=8.34㉔		-5.30
	청량1동73-	청량1동73-235의	콘크리트포장	"	81.3.2
	235의1간	1간 포장공사	A=6.05 a		-5.30
	북2동233의24	북2동233의24-	보도부력포장	상원기업	81.2.28
	-238의26	233의26 포장공사	A=3.59 a	이주식	-4.28
	북2동244의97	북2동244의97-	보도부력포장	"	"
	-244의101	244의101간포장	A=1.9 a		"
	북2동245의49	북2동245의49-	보도부력포장	"	"
	-245의72	245의72간포장공사	A=0.76 a		"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공사개요	시공자	공사기간
	목2동235의121	목2동235의121-	보도부리포장	상원기업	81.2.23
	-235의28	235의28간 포장	A=4.12 a	이주석	-4.25
	목면1동549의1	목면1동549의1-	콘크리트포장	성보건설(주)	81.3.14
	549의14	549의14간 포장	5.4 a	박종택	-5.15
	목2동240의219	목2동240의219-	콘크리트포장		81.3.20
	-182의25	182의25간 포장	20.8 a		-5.20
	이문2동257의	이문2동257의635	콘크리트포장		.
	635-257의49	257의49간 포장	7.2 a		
		및 하수도공사	하수도 D=45		
			L=180 m		
	면목6동43의1	면목6동43의1-43	콘크리트포장		.
	-43의8	의8간 포장 및	7.2 a		
		하수도공사	하수도 D=60		
			L=120 m		
	용두3동112의	용두2동112의79	콘크리트포장		.
	79-112의32	-112의32간 포	6.4 a		
		장및 하수도공사	하수도 D=45		
			L=80 m		
	취경2동39의25	취경2동39의25-	보도부리포장	봉한기업공사	81.1.29
	-39의34간	39의34의3개소	A=7.93 a	김대근	-5.18
		하수도및 포장공사	하수도 D=45cm		
			L=82 m		
	취경2동294의	.	콘크리트포장		
	143-294의284간		A=2.8 a		
	취경2동293의		하수도 D=45cm		
	283-294의4간		L=54 m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공사개요	시공자	공사기간
	남실리 5동 490 번지간	정화여상 진입로 포장공사	보도부력포장 △ = 3.08 a		81.3.30 -6.30
	계기1동 688의1 -678 번지간		아스팔트포장 21 a		
	중화1동 278의1 -276 의 6	중화중 학교 주변포장 공사	콘크리트포장 15 a		
	장안2동 7의10 -53 의 25	면목여상 진입로 포장공사	아스팔트포장 18 a		

상기와 같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
나 본 구간에 지하매설물(전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유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기간중
에 시행토록 하시기 바란다.

1. 공 인 명 : 마포구청장인 (호적, 병사용)
2. 사용개시일 : 1981.4.1
3. 공인의인명 :

81. 3. 21.

서울특별시 강

◎서울특별시공고제 77 호

등인개각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운 아래와 같이 개
각사용 승인하고 관인규정 제 9 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1. 3. 21.

서울특별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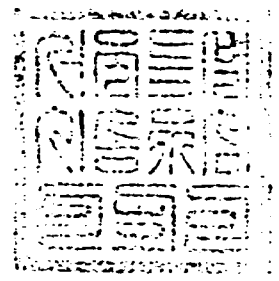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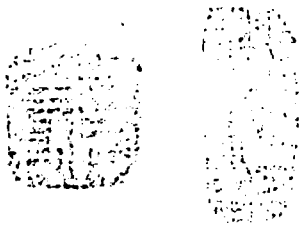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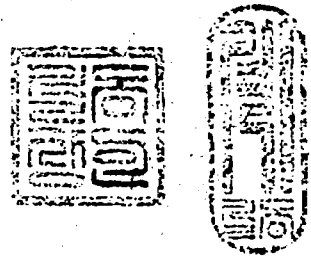
영



공인명

마포구청장인 (호적, 병사용)

<p>○서울특별시공고제 78 호</p> <p>관인신조사용승인·광고</p> <p>서울특별시 공인용 아테와 같이 신조 사용승인하고 관인규정 제 9 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p> <p>1981. 3. 21 서울특별시 장</p> <p>1. 공 인 명 : 서울특별시 송무심의 회인 2. 사용개시일 : 1981. 3. 25 3. 공인의인명 :</p>	<p>인</p> <p>영</p>	
<p>○서울특별시공고제 80 호</p> <p>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 고시제 10 호 (79.1.10) 및 동고시 제 32 호 (79.1.26)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권 강남구 개포동 산 84 번지 일대 학교 시행 사업 구간내 저축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p>	<p>관계인에게 보인다.</p> <p>3. 본 공고 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별도 송달된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p>	<p>1981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장</p> <p>공 랑 개 요</p> <p>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개포동 산 84 번지의 6 필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p>

<p>다. 사업의규모(면적) : 16,102 (4870.8-평)</p> <p>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중구올지로 1가 50번지 삼성빌딩 서울일본인회 회장 김종장</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예정일 : 1981.4. 2) 준공 " : 1981.12</p> <p>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p> <p>사. 사용또는 수용할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익명세 : 생략</p> <p>아.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판지인의 주소, 성명 : 생략</p> <p>자. 기타사항 : 기타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56-8972)로 문의바람</p>		<p>◎강동구청공고제 16호</p> <p>공인개작사용 승인공고</p> <p>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길동장 공인을 사용승인 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조에 의거 이를 공고 한다.</p> <p>1981. 3. . 서울특별시강동구청장</p> <p>1. 공인 개작사용 개시일자 1981.3.23</p> <p>2. 개작된 공인명 : 길동장의 직인 및 계인</p> <p>3. 공인개작인명</p>	
폐		개	
인		인	
공인명	길동장의 직인 및 계인	공인명	길동장의 직인 및 계인